

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<small>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</small>	보 도 참 고 자 료			
	2020. 3. 12. / (총 4매)			
배 포 일				
보건복지부	과 장	김 우 중	전 화	044-202-3580
보육기반과	담 당 자	오 성 일	전 화	044-202-3581
육아정책연구소	담 당 자	이 미 화	전 화	02-398-7720

“잘 놀아야 잘 자란다”, 놀이 중심 표준보육과정 개정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 중심,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* 개정안(보건복지부 고시)을 3월 12일(목)부터 3월 31일(화)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

* 국가 수준에서 0~5세 영아를 위한 표준적 보육과정 제시

- 이번 표준보육과정(0~5세)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「3~5세 누리과정」*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. * '19.7.24. 개정, '20.3.1. 시행

【참고】 개정 누리과정 주요 내용

- ◇ (아동 중심) 교사 주도적 교육에서 벗어나, 아동 주도적·자발적 놀이 권장
- ◇ (놀이 중심) 일과에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, 놀이를 통한 배움 강조
- ◇ (현장 자율성) 계획 수립, 교수 방법 및 평가 등에서 교사 자율성 확대
- ◇ (교육내용 적정화) 연령별 구분 폐지 등을 통해 3~5세가 경험하여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적정화(연령별 369개 세부내용 → 연령 통합 59개 내용)

-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영유아 중심,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통해 자율성·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또한 보육 현장에서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(0~5세)과 누리과정(3~5세)과의 연계를 통해 0~5세 영유아의 경험, 연령 간 발달 연결이 가능하고,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일관된 보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.

□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의 구성 및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◎ 성격

- ① 국가적 공통성, 개별적 다양성 추구, ② 영유아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, ③ 영유아 중심, 놀이 중심, ④ 영유아 자율성·창의성 신장 추구 등 목적 제시

◎ 제1장 총론

① (구성 방향) 추구하는 인간상, 구성 영역 등 제시

-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“건강한”, “자주적인”, “창의적인”, “감성적인”, “더불어 사는” 사람을 제시
- 구성 영역으로 △기본생활, △신체운동, △의사소통, △사회관계, △예술경험, △자연탐구 제시

② (운영)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·운영하고,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 하도록 지원

③ (평가)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 한다는 원칙 제시

◎ 제2장 각론

○ (0~1세, 2세) 3~5세 누리과정에 비해 기본생활 강조

- 특정한 활동 여부보다는, 경험하기, 시도하기에 중점
- 0~1세에 비해 2세는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, 경험시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

○ (3~5세) 개정 누리과정과 동일

- 신체운동·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 각 영역별로 아동의 자발적 놀이, 참여 강조

-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모아 개정 고시한 후, 9월 새 학기부터 일선 어린이집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
 - 고시 후 어린이집 실제 적용에 이르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,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급, 관계자 교육·연수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“이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교사 주도적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중심,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.”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 “표준보육과정 개정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, 개정안이 현장 적용에 성공하도록 어린이집 교사,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 붙임 >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연혁

< 별첨 > 표준보육과정 개정안

붙임

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연혁

□ (2004년) 영유아보육법 개정, 표준보육과정 개발·보급 법적 근거 마련

【참고】 2004.1.29. 전부개정 당시 영유아보육법

제29조 (보육과정)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·정서·언어·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(2007년) 여성가족부, 어린이집 「표준보육과정」 고시

○ 여가부는 2007년에 ‘표준보육과정’을 개발하여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를 마련하고, 2008년부터 적용

* 관련하여 2005년 표준보육과정 개발 연구 실시(한국아동학회·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참여)

□ (2011년) 정부, 취학전 교육·보육 관련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「만5세 공통과정」 도입 발표(11.5.)

□ (2012년) 복지부 어린이집 「제2차 표준보육과정」 고시(12.2.)

○ 5세 누리과정 도입 발표에 따라, 만5세 표준보육과정을 제외하고 0~4세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보완하여 고시

□ (2012년)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「5세 누리과정」으로 통합하여 고시 제정 및 시행(12.3.)

○ 「5세 누리과정」은 모든 유치원·어린이집 만 5세 유아에게 동일 적용

□ (2013년) 기존 5세 누리과정에 이어 “3·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” 발표(12.1.)로 표준보육과정 추가 개정, 「제3차 표준보육과정」 고시(13.1.)

○ 이와 함께, 「3~5세 연령별 누리과정」 고시 및 시행(13.3.)

*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내 3~5세 부분은 동일

□ (2019~2020년) 「제3차 표준보육과정」 현장 적용 결과 및 「2019 개정 누리과정」에 따른 보완 요구로 「표준보육과정」 개정(안) 마련